

## 2025년도 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공모

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급변하는 대내·외 잎담배 생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자, **기계화 연구, 친환경 기자재 및 재배기술 개발, 품종 연구시험 등** 잎담배 생산과 관련한 "**2025년도 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**"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7월 23일

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장 허 진

### 1 사업 개요

□ 사업명 : 2025년도 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

□ 사업목적

- 잎담배 경작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, 실제 경작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와 보급 지원
- 잎담배 경작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경작 농민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

□ 공모주제

생력화 및 친환경 경작방법 개발 등 안정적인 국산잎담배 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사업 중점 지원

- 연초경작을 위한 생력화 기자재 개발
- 연초경작 관련 재배기술 연구개발
- 잎담배 품종관련 연구 시험
-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
- 기타 잎담배 생산과 관련한 연구과제 등

□ 주요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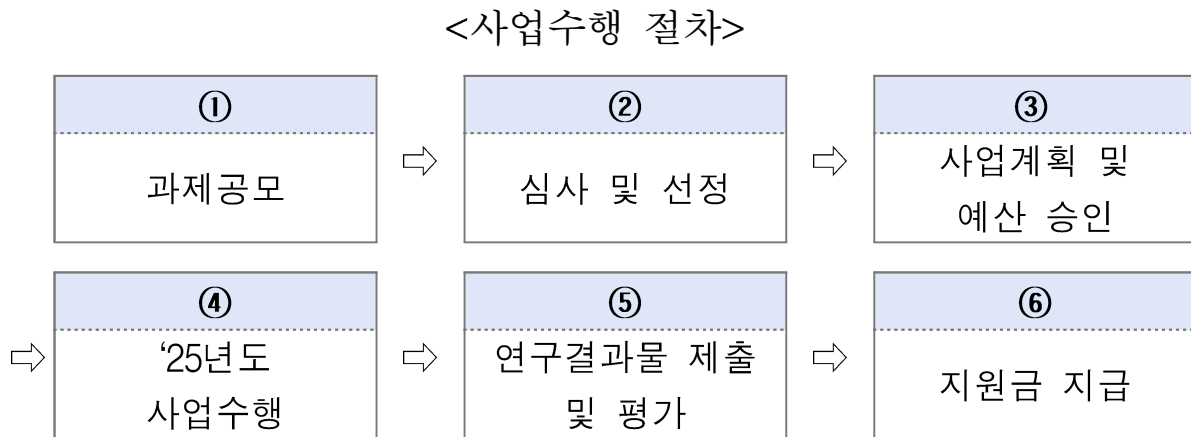
- (공모기간) 2024. 7. 23(화) ~ 8. 30(금)
- (심의 및 확정) 확정된 연구사업은 연구사업자에게 개별통보

□ 공모방법 및 접수처

- 공모방법 : 우편, 팩스, 전자메일 등
- 접수처

담당자	연초생산안정화재단 사업관리팀 김두봉 매니저
주소	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55, 8층(우34014)
연락처	Tel. 042-671-0084(Fax. 042-671-0089)
이메일	ft6012@hanmail.net

**2** 사업수행 절차



## I. 연구사업 과제공모

- 연구개발사업 신청서[서식 제1호]와 사업계획서[서식 제2호]를 작성하여 재단 사업관리팀에 제출
 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경작농민, 산업체, 대학 및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공동연구자로 하여 참여 가능
  -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,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기연구 또는 장기연구로 구분하여 연구 수행

구 분	기간 및 내용	비 고
단기연구	연구기간 1년 이내에 결과도출이 가능한 연구과제	1년 이하
장기연구	연구목적 달성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거나 다년간의 반복시험이 필요한 연구과제	1년 초과

## II. 연구개발사업 선정 및 확정

### 「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」

-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,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향 및 지원 규모 결정
  - (심의내용) 기존 연구실적과 중복 여부, 추진전략 및 계획,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, 연구결과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등

< 연구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>

구 분	심의의원
연초생산안정화재단	사무국장, 사업관리팀장, 사업관리 담당자 1인
업연초중앙회	업무담당자 1인
(주)KT&G	업무담당자 1인

## 「재단 이사회 및 기획재정부」

- 사업계획에 반영된 연구사업은 재단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 승인을 통해 2025년도 연구개발사업으로 최종 확정

### Ⅲ. 연구사업 수행

-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연구사업자는 **확약서 [서식 제3호]** 제출 후,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 개발 사업 수행
  - 연구사업자는 재단에서 요청할 경우, **중간보고서[서식 제4호]** 및 **관련자료** 제출
  - 연구사업 수행 중 **사업 계획의 변경** 필요한 경우, 연구사업 **변경계획서**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수행

※ 연구 수행상태 수시 점검

연구 성과 달성을 위하여 재단은 연구 개발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사업 수행상태 수시 현장 점검

### Ⅳ. 연구결과 평가 및 지원금 지급

#### 「연구 결과 제출 및 지원금 청구」

- **(결과 제출)** 연구사업자는 매연도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 **[서식 제4호]**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
  - 연구결과 보고서는 시험데이터, 사진자료, 연구성과 및 실적,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
- **(지원금 청구)** 연구개발비 지원금은 매연도 연구과제별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

- 연구사업자는 매연도 사업종료 후, 연구개발비 지원금 신청서 [서식 제5호, 제6호, 제7호] 및 관련서류(연구비 지출관련 적격증빙 등)를 재단으로 제출

<증빙자료 예>

구 분	내 용
인건비	인건비 지급내역(통장사본, 송금내역), 작업일지(작업내역 및 인부 서명) 등
토지임차료	토지임차 계약서, 임차료 지급내역
연구개발품 구입 및 제작비	신용카드 영수증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

**「연구결과 평가 및 지원금 결정」**

- 연구결과 제출이 완료되면, 재단은 “연구개발사업 평가회”를 개최 하여 연구 사업별 **결과평가** 및 **연구비 지원금 지급 규모 결정**
  - (평가항목) 연구목표 달성 및 추가연구 필요여부,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, 연구성과의 확산 및 보급 방안 등

※ 연구결과 발표 및 우수연구자 포상

연구결과는 연구사업자가 직접 발표해야하며, 우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 예정

### 3 유의사항

#### I. 연구비 지원금 지급

- 연구비 지원금은 당해년도 연구과제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개발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
  - 연구사업 지원금은 매연도 계획에 따른 사업 종료 후, 지급하는 것이 원칙
    - 다만,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용역계약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
    - 장기연구사업의 경우, 연구사업계획서에 따라 연도별 지원 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-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제작비, 연구포지 임차료, 시험 앞담배 보상금, 용역비 등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성 경비만 지원

#### <직접성 경비 예>

구 분	지급처	지급내용	비 고
연구개발비	연구 사업자	재료구입비, 제작비, 설치비 등	-
연구용역비		연구용역 관련 비용	용역계약서에 따라 지급
인 건 비		연구 수행에 투입된 고용인건비	<u>연구사업자 본인 인건비 제외</u>
시험앞담배 보상금	경작자	연구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앞담배 손해에 대한 보상금	-
기 타	연구 사업자	기타 연구사업 수행에 투입된 비용	사업별 예산 범위내 지급

## II. 지원금 지급 제한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지원 사업 취소, 회수, 지급대상 제외
  - 연구개발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
  - 진행상황 확인 및 보고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
  -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,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

## III.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- 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, 기술, 제품 및 특허권, 지적 재산권은 재단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하고, 상호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, 허여 및 판매 금지

## IV. 공모의 제한

- 지원 사업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사유에 의하여 사업에 제한을 받거나 제한 받은 자는,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구 개발사업 참여 제한

### ※ 관련 근거

1. 재단 정관 제1장 제4조(사업)
2. 재단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('18.7.23)

- 관련 서식 -

- [서식 제1호]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신청서
- [서식 제2호]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계획서
- [서식 제3호] 확 약 서
- [서식 제4호]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 결과 보고서(중간, 최종)
- [서식 제5호] 연구개발비 지원금 신청서
- [서식 제6호] 연구개발비 지원금 신청내역서
- [서식 제7호] 시험잇담배 보상금 신청서